

의안번호	2209247
의 퇴 인	정성국 의원
회 답 일	2025.06.30.
추계번호	25C1830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,675만원(연평균 735만원)으로 추계
-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인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교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 (안 제3조의2)	7.4	7.4	7.4	7.4	7.4	36.8	7.4

주: 1.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2.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인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의2 (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)	(제1항) 국가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등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의2 (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교원보수위원회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며,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준용함
 - 추가재정소요는 위촉위원의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하며, 회의장소 임차료 등 부대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
 - 현재 훈령인 「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」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·운영되고 있음¹⁾
-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준용하며, 위촉위원의 수에 참석 수당과 회의 횟수를 곱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(위촉위원 수) 개정안의 규정을 고려하여 7명으로 함
 - － 안 제3조의2는 교원보수위원회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3명,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2명,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(참석 수당 및 회의 횟수)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준용하여 1인당 35만원을 지급하며, 연 3회 개최된다고 가정

1) 「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」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명 이내

2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

3. 노동·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

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.

-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, 최근 5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연평균 개최 횟수는 3회임
- 추계기간 동안 참석 수당은 일정하다고 가정

□ 교원보수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735만원씩 향후 5년간 3,675만원으로 추계

[표 2] 교원보수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위촉위원 수(A, 명)	7	7	7	7	7	-	-
참석 수당(B, 만원)	35	35	35	35	35	-	-
회의 횟수(C, 회)	3	3	3	3	3	-	-
추가재정소요 (D=A×B×C, 만원)	735	735	735	735	735	3,675	735

주: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□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